

제422회 정례회
'24. 11. 28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및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법령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함 (안 제3조)
 - (현행)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→(개정)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
- 지원내용에 냉·난방비, 양곡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,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을 신설함. (안 제6조)
-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빠른 고령화로 인해 충청북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, 이에 따라 노인복지 확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.
- 충청북도에는 4,40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음.
 - 경로당은 주거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1)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, 마을 어르신들의 상호교류는 물론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.
- 즉,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여가복지시설로, 기능 보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지원 및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2)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변경한 것임.
 - (현행)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→(개정)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
- 안 제6조제1호는, 지원 내용 중 경로당 운영비에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를 포함한 것임.
 - 이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의23)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1)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) 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- 안 제6조제6호는, 지원 내용에 ‘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’을 신설한 것임.
 - 이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4)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5)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
 -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후 경로당의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 - 다만 사업 추진 시, 기능보강 대상 경로당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.

- 현행 제14조(시행규칙)은,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6)에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음.
 -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,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(사업의 위탁)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지원 및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

-
- 3)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4) 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 - 5) 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 - 6)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-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